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벼	보수월액(고지금액)		금액) 소득월액(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103,620	8,810	0	0
02월	103,620	8,810	0	0
03월	103,620	8,810	0	0
04월	83,560	7,110	0	0
05월	83,560	7,110	0	0
06월	83,560	7,110	0	0
07월	83,560	7,110	0	0
08월	83,560	7,110	0	0
09월	83,560	7,110	0	0
10월	83,560	7,110	0	0
11월	83,560	7,110	0	0
12월	83,560	7,110	0	0
연말정산	-155,040	-11,440		
합계	907,860	78,980	0	0
총합계				986,840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144,360	0
02월	144,360	0
03월	144,360	0
04월	144,360	0
05월	144,360	0
06월	144,360	0
07월	125,190	0
08월	125,190	0
09월	125,190	0
10월	125,190	0
11월	125,190	0
12월	125,19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	0	
실업크	실업크레딧 납부금액	
합계	1,617,300	0
	총합계	1,617,30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<b>本</b>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	수익자)	종피보험자2(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	수익자)	
	삼성화재해상보	험(주)	무배당 삼성화재 건	강보험 NEW			
보장성	202-81-45	5***	5180592304	10000	940805-*****	김지현	1,800,000
	인별합계금액						1,800,0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-3-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**5-25-56***	人*****	일반	335,000
**6-32-52***	레***	일반	8,800
**0-96-08***	위*****	일반	23,500
**1-91-56***	정*****	일반	907,800
**9-79-00***	문***	일반	110,750
**7-38-00***	O *****	일반	12,000
**3-92-00***	<u>\$</u> *****	일반	140,000
**1-33-00***	로*****	일반	100,800
**5-04-34***	정****	일반	2,8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641,45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641,45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5,910,366	706,300	1,572,610	93,126	28,282,402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 주 )	일반	326,151
신용카드	214-81-37***	비씨카드 ( 주 )	대중교통	201,90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일반	7,221,18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341,30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226,100
신용카드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	도서공연등	92,175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일반	18,363,035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365,000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,144,610
신용카드	213-86-15***	현대카드주식회사	도서공연등	951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	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인별합계금액				28,282,402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는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-6-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 전통시장	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3,193,800	0	0	0	3,193,800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14-81-37***	비씨카드 ( 주 )	일반	2,321,600
직불카드 등	104-86-56***	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	872,200	
인별합계금액				3,193,800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,177,561	12,900	0	0	2,190,461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
구분	조 근	01월	02월	03월	04월	고레디사그애
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215,000	51,900	121,308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57,800	148,050	283,594	293,820	2,177,561
		476,070	217,680	145,704	166,635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0	0	0	0	12,900
		0	0	0	12,9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# 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지현	940805-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체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합계	공제대상 기부금액	기부장려금 신청금액
603-82-07337	(사)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	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	10,000	10,000	0
인별합계금액				10,000	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